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안 건	제안자	접수일자	의결일자	의 결	비 고
1	3416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신정이 의원 대표 발 의	2025.3.21.	2025.3.27.	수정의결	붙임1) 수정조례안
2	3417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조정희 의원 대표 발 의	2025.3.21.	2025.3.27.	원안가결	붙임2) 조례안
3	3410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4	3411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5	3412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6	3413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7	3414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8	34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창군수	2025.3.19.	2025.3.27.	원안가결	

[붙임1]

1. 안건 :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가. 제 안 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5. 3. 21.

다. 심사일자 : 2025. 3. 25.

라. 의결일자 : 2025. 3. 27.

2. 의결 : 수정의결(수정조례안 첨부)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신정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6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의 및 찬성의원 : 신정이 의원 등 8인

1. 제 안 이 유

- 순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 요 내 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예방 및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협력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안 제10조)
-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 협의 등 : 농업축산과 등
- 입법예고기간 :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실시 예정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피해조사) 군수는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1. 안건 :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가. 제안자 : 의원발의

나. 접수일자 : 2025. 3. 21.

다. 심사일자 : 2025. 3. 25.

라. 의결일자 : 2025. 3. 27.

2. 의결 : 원안가결(조례안 첨부)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조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7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의 및 찬성의원 : 조정희의원 등 8인

1. 제 안 이 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관련기관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피해 방지 지원 사업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 협의 등 : 경제교통과 등
- 입법예고기간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후 실시 예정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순창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순창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사업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